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19

발의연월일: 2025. 2. 21.

발 의 자: 송언석 · 이종욱 · 이인선

구자근 · 김태호 · 최은석

박수영 • 박준태 • 김상훈

신성범 · 임이자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비용)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공사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적 제한 공사나 고난이 도 공사를 제외한 일반 공사의 투찰가는 여전히 낙찰 가능 하한액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임.

순공사원가는 공사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하는 최소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행위는 적자 시공을 감수하는 덤핑 입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시공 품질저하, 공사 지연, 안전 문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개정안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법률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억원"을 "50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② (생 략)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	③		
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			
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			
로서 예정가격이 <u>100억원</u> 미만	<u>500</u> 억 원		
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			
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